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은 틀틀 하게 소비자는 행복 하게
---	-------------	----------------------

보도	2024.2.8.(목) 석간	배포	2024.2.7.(수)		
담당부서	상품심사판매분석국 투자상품팀	책임자 담당자	팀장 선임조사역	심서연 정지운	02-3145-8236 02-3145-8238

[금융꿀팁] <150>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시리즈 제4편 신용카드

- 신용카드는 소득수준, 소비성향 등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상품 종류별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이에 지난번 보험편(143번째), 예·적금편(146번째), 금융투자편(149번째)에 이어 신용카드편을 **150번째** 금융꿀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시리즈

순서	내 용
1	보험상품은 소득수준, 가입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하세요!
2	예적금상품은 목돈 마련 등 활용목적에 맞게 가입하세요!
3	금융투자상품은 자금운용계획,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하세요!
4	신용카드는 소득수준, 소비성향 등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 신용카드는 현명하게 사용할 경우 제휴할인, 포인트 적립,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남용 시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8가지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입사원 여러분에게 유익한 신용카드 이용 정보

- ① 본인의 소득 및 목표 저축률에 맞게 카드 이용 목표 한도를 설정하세요.
- ② 본인의 소비성향에 적합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혜택 제공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③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 한도·요건 등을 미리 확인하여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쟁기세요.
- ④ 숨어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활용하세요.
- ⑤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에 대비하고, 분실·도난시에는 즉시 신고하세요.
- ⑥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서비스 이용 시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됨에 유의하세요.
- ⑦ 리볼빙 서비스 이용은 고리의 수수료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채무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⑧ 카드의 해외 사용시에는 현지 통화 결제가 유리합니다.

1

본인의 소득 및 목표 저축률에 맞게 카드 이용 목표 한도를 설정하세요.

- 신용카드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소득수준,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하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저축·투자율을 고려하여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사정에 맞게 카드 이용 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추가 Tip

결혼, 자동차 구매 등 일시적으로 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사(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 임시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소비성향에 적합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혜택 제공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별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에서의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 중 본인의 소비·지출 성향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발급받고,

* 커피전문점, 편의점, 대중교통, 이동통신, 음식점, 주유, 영화관, 놀이공원 등

-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할인 및 적립 조건(월 일정액 이상 사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Tip 카드별로 이용실적 산정시 제외되는 항목(예: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제외), 실적 산정기간(예: 전월 1일 ~ 말일), 월별 최대 할인·적립한도(예: 월 통합할인한도 2만원), 세부 할인요건(예: 건당 5천원 이상 결제시 할인) 등을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 카드별 월 사용금액 현황 및 할인혜택 조건 달성을 여부 등을 신용카드사의 앱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월 실적 충족 여부 조회 결과(예시)

실적 충족 여부 조회	실적인정 상세 조회														
 <p>이용실적·혜택</p> <p>< 2024년 01월 ></p> <p>실적 인정금액 213,200원</p> <p>0구간 1구간 지난달 달성</p> <p>실적 달성을 위한 86,800원 추가 이용 시 다음 달 1구간 혜택 적용</p> <p>※ 실적 인정금액은 전표 접수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할인·적립 등 혜택 받은 전표나 매출취소 등으로 이용실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구간별 혜택 내용</p> <p>0 1</p> <p>(0원 이상 ~ 30만원 미만)</p>	 <p>상세조회</p> <p>< 2024년 01월 ></p> <table border="1"> <thead> <tr> <th>날짜</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24.01.02 08:50</td> <td>12,900원</td> </tr> <tr> <td>24.01.06 03:24</td> <td>17,000원</td> </tr> <tr> <td>24.01.08 19:16</td> <td>10,600원</td> </tr> <tr> <td>24.01.08 19:19</td> <td>6,500원</td> </tr> <tr> <td>24.01.08 22:55</td> <td>74,400원</td> </tr> <tr> <td>24.01.10 08:12</td> <td>4,200원</td> </tr> </tbody> </table>	날짜	금액	24.01.02 08:50	12,900원	24.01.06 03:24	17,000원	24.01.08 19:16	10,600원	24.01.08 19:19	6,500원	24.01.08 22:55	74,400원	24.01.10 08:12	4,200원
날짜	금액														
24.01.02 08:50	12,900원														
24.01.06 03:24	17,000원														
24.01.08 19:16	10,600원														
24.01.08 19:19	6,500원														
24.01.08 22:55	74,400원														
24.01.10 08:12	4,200원														

3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 한도·요건 등을 미리 확인하여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챙기세요.

-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는 통상적인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3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시에는 450만원 한도(기본공제 한도 250만원, 추가 공제한도 20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 대중교통 요금, 도서·공연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이용액은 카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각각 100만원 한도, 40% 공제율,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한도, 30% 공제율
(단, '23년중에는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 공제율이 이보다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

추가 Tip 신용카드는 체크카드 대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소득공제율은 낮으므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 적용
(국세청(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1~9월중 사용한 신용 카드 금액 확인 가능)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결제 수단	비고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미달	신용카드 유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고려
최저사용금액 ~ 기본공제 한도액	체크카드 유리	높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고려
기본공제 한도액 초과	신용카드 유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고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4

숨어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활용하세요.

-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카드 이용대금 결제, 교통카드 충전,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 국세 납부 등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www.payinfo.or.kr) 및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를 통하여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어카운트인포')을 통한 조회도 가능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및 현금화 사이트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www.payinfo.or.kr)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www.crefia.or.kr)
	

추가 Tip 신용카드 포인트는 장기간(통상 5년) 미사용시 소멸되므로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5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에 대비하고, 분실·도난시에는 즉시 신고하세요.

- 카드 이용자는 카드 분실·도용 등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귀책 수준에 따라 채무부담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므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카드를 발급받으면, 수령하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되어 부정 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등에 기재하는 것 또한 금물입니다.
 - 카드 비밀번호 누설에 따라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여 카드 분실·도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한 신용카드 중 1개 신용카드회사에 분실 신고시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일괄로 신고·접수 가능한 서비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I. 분실한 카드 회사 중
한 곳에 신고

II. 분실 카드사 일괄 선택
및 신고 요청

III. 신고 접수
확인 문자 수신

분실신고

분실 일괄신고 요청

문자 수신

다수 카드 분실시
신고인이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접수 카드사)에 신고

접수 카드사에 분실한 타사
카드도 선택하여
일괄 분실신고 요청

분실신고 요청을 받은 타 카드사는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

추가 Tip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으며,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서비스 이용 시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됨에 유의하세요.

- 일시불 등 통상적인 신용카드 사용 외에 할부서비스·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서비스 이용시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별 평균 수수료율(23년말 기준, 여신금융협회)

: 할부서비스 12.25~18.00%, 현금서비스 16.66 ~ 19.73%, 카드론 12.09 ~ 17.07%

- 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대비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신속·용이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Tip

헬스장, 피부관리실 등을 할부로 결제할 경우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20만원 이상의 할부계약에 대해서는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7

리볼빙 서비스 이용은 고리의 수수료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채무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 ~ 19.03%로 일반 신용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 또한,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하여 높은 이자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Tip 신용카드 발급신청시 리볼빙서비스를 필수 가입사항으로 오인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가입 동의를 선택하여 이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사 앱 등을 통하여 본인의 리볼빙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카드의 해외 사용 시에는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합니다.

- 해외 여행·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 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Tip 신용카드 결제 후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외 원화 결제(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가 적용된 것이니 서비스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하여 추가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바랍니다.

*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원화 결제금액을 사전에 확인 가능

해외 원화결제 차단 신청 화면 예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